

■ 등기특별회계규칙 [별표 3] <개정 2025. 12. 24.>

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

구 분	관 직 지 정	
기관별회계직명	등기특별회계수입금출납공무원	등기특별회계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
법 원 행 정 처	재무담당관실 재무담당사무관	부동산등기과장
지 방 법 원 및 가 정 법 원	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(서울행정법원, 서울회생법원, 수원회생법원, 부산회생법원, 대전회생법원, 대구회생법원, 광주회생법원 제외)	등기과장(후견등기 관련 제외). 단, 등기과장이 없는 지방법원(서울행정법원 제외)은 사문서일자확정청구사건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 자(2인이상인 경우 선임자) 가족관계등록과장(후견등기 관련). 단, 가족관계등록과장이 없는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은 선임후견등기관
지 원 및 가 정 지 원		등기과장(후견등기 관련 제외). 단, 등기과장이 없는 지원은 등기관(2인이상인 경우 선임자), 등기관이 없는 지원은 사문서일자확정청구사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자(2인이상인 경우 선임자) 가족관계등록과장(후견등기 관련). 단, 가족관계등록과장이 없는 지방법원의 지원, 가정법원의 지원 또는 가정지원은 선임후견등기관
등 기 소		등기소장